

보수규정

	제정	2010.	1. 29.	규정 제13호
	개정	2010.	6. 22.	규정 제22호
	개정	2010.	12. 17.	규정 제30호
	전부개정	2011.	3. 2.	규정 제38호
	개정	2012.	1. 26.	규정 제54호
	개정	2012.	3. 5.	규정 제55호
	개정	2012.	6. 5.	규정 제59호
	개정	2013.	3. 4.	규정 제62호
	개정	2014.	1. 2.	규정 제70호
	개정	2014.	1. 21.	규정 제71호
	개정	2014.	4. 17.	규정 제78호
	개정	2014.	8. 29.	규정 제82호
	개정	2015.	1. 29.	규정 제86호
	개정	2015.	6. 23.	규정 제92호
	개정	2015.	9. 9.	규정 제102호
	개정	2016.	2. 29.	규정 제111호
	개정	2016.	4. 29.	규정 제112호
	개정	2016.	7. 14.	규정 제116호
타 규정의 개정(직제규정)	개정	2016.	11. 2.	규정 제120호
	개정	2016.	12. 28.	규정 제124호
	개정	2017.	3. 6.	규정 제127호
	개정	2017.	11. 7.	규정 제130호
	개정	2018.	3. 13.	규정 제132호
	개정	2018.	7. 16.	규정 제133호
	개정	2018.	12. 26.	규정 제138호
	개정	2019.	3. 14.	규정 제139호
	개정	2019.	12. 16.	규정 제152호
	개정	2019.	12. 27.	규정 제154호
	개정	2020.	2. 5.	규정 제157호
	개정	2020.	2. 28.	규정 제160호
타 규정의 개정(정관)	개정	2020.	6. 4.	규정 제169호
	개정	2021.	3. 18.	규정 제185호

개정 2021. 5. 26. 규정 제187호
 개정 2022. 2. 25. 규정 제194호
 개정 2022. 8. 18. 규정 제198호
 개정 2023. 3. 2. 규정 제205호
 개정 2023. 6. 29. 규정 제207호
 개정 2023. 12. 28. 규정 제211호
 개정 2024. 3. 5. 규정 제212호
 개정 2025. 2. 27. 규정 제2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상임 임원과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3., 2020.6.4., 2023.12.28.>

제2조(적용범위) 상임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6.23., 2023.12.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직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연봉, 기타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정 2015.6.23.>
2. “연봉”이란 기본연봉, 직무급, 성과연봉을 말한다. <개정 2015.6.23.>
3. “직급별 임금범위”란 직급별 기본연봉의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5.6.23.>
4. “기본연봉”이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으로서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되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5. “직무급”이란 직무의 중요도, 책임도,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5.6.23., 2021.3.18.>
6. “성과연봉”이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7. “기타수당”이란 직무 여건, 생활 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숙인성 부가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5.6.23.>
8. “기본연봉월액”이란 기본연봉 및 직무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6.23.>
9. “연봉월액”이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10. “통상임금”이란 기본연봉월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 2015.6.23., 2023.12.28.>
1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제4조(사회보험 등) ① 정보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사회보험, 퇴직금 등을 보수와 별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 ② 원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 ③ 원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 직원 및 급여담당자는 자신 또는 다른 직원의 연봉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6.23.>

제6조(기타사항)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직원의 보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규정의 시행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제2장 보수

제7조(연봉) ① 임원의 연봉은 별표1의 연봉기준표에 명시된 연봉으로 한다.

② 직원의 연봉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기본연봉 임금범위) ① 기본연봉 임금 범위는 직급별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하한액을 정하고 임금 범위 폭을 조정하여 상한액을 정한다. <개정 2023.12.28.>

② 직원의 직급별 임금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③ 기본연봉의 직급별 임금 범위는 직원의 연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한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 기간의 기본연봉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9.>

⑤ 제4항에 의한 임금피크제는 정년퇴직일 기준 1년 전부터 적용하며, 기본연봉의 조정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9.9., 2016.7.14., 2019.12.16.>

제9조(기본연봉의 인상) ① 원장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직원의 해당 연도 임금 인상률을 결정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② 원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평가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성과평가 결과에 의거 별표 3에 따라 개인별 기본연봉 인상률을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5.6.23., 2016.4.29., 2023.12.28.>

③ 해당 연도 기본연봉 인상률은 다음 연도에도 누적되어 영향을 미친다. <개정 2015.6.23.>

[제목 개정 2015.6.23]

제10조(신규 채용 시 기본연봉) ① 신규 채용 직원의 기본연봉은 직급 및 경력을 고려하여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2023.12.28.>

② 원장은 우수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채용 직원의 기본연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제목 개정 2015.6.23]

제11조(승진 시 기본연봉) ① 승진한 직원의 기본연봉 가산율은 매년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② 제1항에 따른 승진 시 연봉조정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제목 개정 2015.6.23]

제12조(직무급) ① 직원에게 직무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직무급은 직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6.12.28.>

② 인사이동 등으로 직무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변경된 직무급을 적용한다.

③ 직무급의 표준액 및 차등 지급률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④ 직무급은 휴직자, 직위해제자, 대기발령자, 공로연수자 및 임금피크제 별도직군은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승인된 휴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6.23., 2015.9.9., 2019.12.16., 2023.12.28.>

⑤ 직무급 지급 대상 직원이 교육, 파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간은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⑥ 직무급은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 성격의 연봉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6.23.>

제13조(성과연봉) ① 원장은 매년 확보된 임금 자원 내에서 성과연봉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③ 성과연봉은 경영 성과와 업무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성과와 업적에 의거 별표4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세부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다음 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비누적 성격의 연봉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6.23, 2016.4.29.>

④ 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성과연봉을 지급하기 위하여 업무성과 등의 평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종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⑥ 부장 이상 보직을 부여받은 직원의 성과연봉 비중은 총연봉 대비 2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4.29.> <개정 2017.11.7.>

제14조(연봉 등의 계산) ① 보수는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6., 2015.6.23.>

②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할 경우는 연봉월액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12.1.26., 2015.6.23., 2018.7.16.>

③ 보수는 특별히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 승진, 휴직, 강임 및 감봉, 전직, 전보, 면직 그 밖의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6., 2015.6.23.>

④ 제3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받은 임직원이 그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때에는 그달의 연봉월액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되 새로이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26., 2015.6.23.>

⑤ 퇴직자의 보수는 퇴직일까지의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되,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그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퇴직하거나 징계처분으로 해직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다. <개정 2012.1.26, 2015.6.23, 2018.12.26>

⑥ 퇴직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는 그 기간에 대하여 퇴직 당시의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제15조(연봉지급방법) ① 기본연봉 및 직무급은 12분의 1로 나누어 매월 급여 지급 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1일로 한다. 만일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경우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성과연봉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성과평가가 종료된 이후에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성과연봉의 지급 세부 기준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6.23., 2023.12.28.>

③ 보수를 지급할 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다. <개정 2015.6.23.>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부담분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④ 연봉계산에 있어서 “십 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3.>

제16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봉 외에 다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2. 가족수당
3. 연차유급휴가 보상수당
4. 기타 예산으로 정하는 수당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그 밖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3>

제17조(적용기간) ① 연봉의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계약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계속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전년도 기본연봉에 준하여 지급하되, 기본연봉이 갱신 체결되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봉대상자가 신규 임용된 경우는 임용된 연도에 한해 임용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② 승진 등 신분 변경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본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적용 기간은 해당 연도에 한해 발령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18조(휴가자의 보수) ① 산전 후 휴가자 및 유산·사산 휴가자의 보수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은 유급으로 하고,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75일)이 경과한 후의 기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3., 2019.12.27.>

② 생리휴가자, 가족돌봄휴가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8.>

③ 제1항 내지 제2항 이외의 휴가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전액 지급한다.

제19조(결근자 등의 보수) 「복무규정」 제12조에 따라 무단결근, 지각, 무단외출 또는 무단조퇴 기간에 대하여는 기본연봉을 일할계산하여 그 금액의 5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3.>

제20조(휴직자의 보수) ①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한 직원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12.28.>

② 직무상 관련 없는 질병·부상 휴직자의 보수는 휴직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기본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하고,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는 기본연봉월액의 3할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부상에 의한 휴직이 고의 또는 위법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3.>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직위해제자의 보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부를 조정하여 지급한다.

1.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제2항제5호, 제6호, 제7호에 해당하여 직위 해제된 자는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기본연봉월액의 8할을 지급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본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한다.

2.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제23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거나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직위 해제된 자는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기본연봉월액의 5할을 지급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본연봉월액의 3할을 지급한다. <개정 2015.6.23., 2022.8.18.>

② 직위해제 처분 취소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당 기간 지급이 제한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3., 2023.6.29.>

1. 「인사규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이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는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액분 소급 지급

2.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직위 해제된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인사규정」 제62조제1항제4호 중 제23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수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하거나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단, 해당 사건이 재수사·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감액분 소급 지급

제22조(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 ① 징계처분 중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보수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15.6.23., 2022.8.18.>

② 징계처분 중 감봉처분을 받은 임직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6.23., 2018.7.16.>

③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제21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3., 2023.6.29.>

제23조(강입 시 연봉보전) ① 강입된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강입된 직급에 해당하는 연봉을 지급하되, 강입된 직급의 동일 경력자와의 기본연봉의 차액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제21조제2항은 강입 시 연봉에 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15.6.23.>

[제목 개정 2015.6.23.]

제3장 퇴직금

제24조(퇴직금의 지급) 원장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이 퇴직하거나 직원이 상임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6.23.>

제25조(퇴직금의 지급액 산정방법) ①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6.23.>

② 휴직, 병가 및 결근(이하 “휴직 등”이라 한다) 기간 중 퇴직하거나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 휴직 등으로 보수가 감액된 달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등을 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한다. <개정 2014.8.29., 2015.6.23.>

③ 비위행위로 인한 정직, 직위해제, 감봉 등으로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 보수가 감액된 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한다. 다만, 감액된 달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8.29., 2015.6.23.>

[제목 개정 2015.6.23.]

제25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1/2을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8조제4항 및 제8항, 제52조의3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을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였을 때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는 퇴직금의 1/2을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지급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 신설 2022.8.18.]

제26조(계속근속기간의 계산) 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발령일까지 계산한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임직원이 유죄판결로 퇴직하는 경우는 해당 직위해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6.5., 2015.6.23.>

② 재직 중 사망 또는 정보원의 사정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1년 미만의 단수처리는 월할계산한다. 다만, 월할계산의 경우는 제14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5., 2015.6.23., 2016.12.28.>

[제목 개정 2015.6.23.]

제27조(퇴직금의 중간정산)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의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②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개정 2015.6.23.>

[제목 개정 2015.6.23.]

- 제28조(명예퇴직수당)** ① 「인사규정」 제60조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금 이외에 별표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 ②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5.26.>
- ③ 임원 승진을 전제로 퇴직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12.28.>

제4장 기타급여

제29조(비상임 임원 및 위원 등에 대한 실비 등 수당) 비상임인 임원 및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 제30조(업무수행의 실비)** ① 「인사규정」 제27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거나 겸임하는 경우와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2018.7.16.>
- ② 「직제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파견 근무자에게 직위 또는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제31조(훈련보조비)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동원, 소집, 교육훈련 등에 참가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제32조(재해보상) 임직원이 업무상 사망, 부상 등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3.>

- 제33조(복리후생비의 지급)** ①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급을 위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23.>

제5장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제34조(적용범위) 이 장은 「직제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6.23.>

제35조(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①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담당업무 특성, 근로 연한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6.23.>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 결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6., 2015.6.23.>

부 칙 <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6.22.>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17.>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3.2.>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6.>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 임원 연봉에 대한 경과조치) 2012년도 상임 임원 연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6.5.>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3.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 임원 연봉에 대한 경과조치) 2013년도 상임 임원 연봉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1.2.>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임 임원 연봉지급에 대한 특례) 원장의 연봉은 제4조(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하고, 상임이사의 연봉은 종전 규정에 의거 지급되는 원장 연봉의 80%를 지급한다.

부 칙 <2014.4.17.>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8.29.>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9.>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2호, 2015.6.23.>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2호, 2015.9.9.>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1호, 2016.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12호, 2016.4.29.>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6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피크제 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57세에 도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120호, 2016.11.2.>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4호, 2016.12.28.>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7호, 2017.3.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상임 임원에 대하여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130호, 2017.11.7.>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2호, 2018.3.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상임 임원에 대하여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 인상된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133호, 2018.7.16.>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8호, 2018.12.26.>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9호,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봉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상임 임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152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임금피크제를 적용 중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8조 제5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154호, 2019.12.27.>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7호, 2020.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봉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상임 임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160호, 2020.2.28.>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9호, 2020.6.4.>

이 규정은 2020. 5. 12. 승인된 개정 정관의 시행일(2020. 6.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5호, 2021.3.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봉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상임 임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187호, 2021.5.26.>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4호,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봉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상임 임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198호, 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위해제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직위해제된 자는 제2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징계 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징계 처분 중 정직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직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205호, 2023.3.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봉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상임 임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연봉을 지급한다.

부 칙 <규정 제207호, 2023.6.29.>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1호, 2023.12.28.>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12호, 2024.3.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18호, 202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봉지급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상임 임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원 장	158,302
상 임 이 사	126,641

[별표2] <개정 2023.12.28.>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

구분	정년 잔여기간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 기본연봉월액 × 정년 잔여 월 수 / 2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 기본연봉월액 × [30 + (정년 잔여 월 수 - 60) / 4]
3	10년 초과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3]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적용 기준표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 비율		10%	15%	50%	15%	10%
인상률	1~2급 (3급 부장 보직자 포함)	$a + 1.0\%$	$a + 0.5\%$	a	$a - 0.5\%$	$a - 1.0\%$
	3~6급, 연구직, 기능직	a				

* a는 당해연도 평균 기본연봉 인상률

[별표4]

성과연봉 차등적용 기준표

평가등급		S	A	B	C	D
인원 비율		10%	15%	50%	15%	10%
차등폭	1~2급 (3급 부장 보직자 포함)	S등급 - D등급 간 2배				
	3~6급, 연구직, 기능직	S등급 - D등급 간 1.2배				